

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주민공모사업에 관한 질의회답

【문】 우리시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창신송인(종로구) 등 8개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·고시하였고, 묵2동 등 6개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.

- 도시재생사업(8개소) : 창신송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동 장위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
- 활성화 계획 수립 중(6개소) : 묵2동, 수유1동, 창3동, 불광2동, 천연충현동, 난곡난향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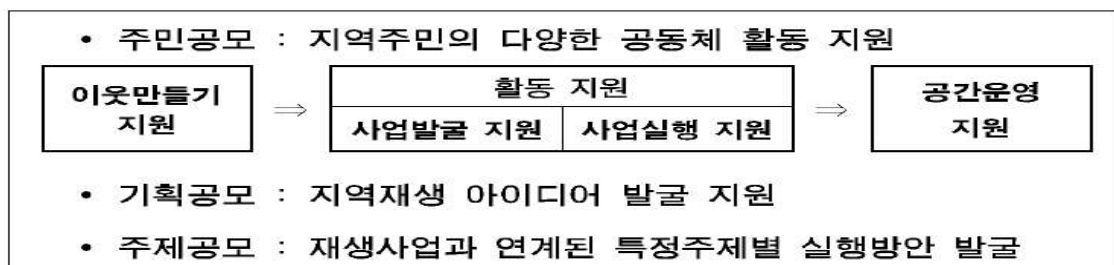
○ 서울시 및 자치구가 사업지역별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 센터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업무 외에 법령으로부터 위임 받아 도시재생 관련 등 조례로 정한 업무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주민과의 최일선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○ 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주민공모 사업 개요】

□ 주민공모사업 유형 및 지원내역

- 신청자격 :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및 비영리 단체(마을기업 등)
- 체계도



○ 지원내용 및 사업기간

구분	이웃만들기	사업발굴	사업실행	공간운영
최대지원금액	100만원	250만원	500만원	1,000만원
사업기간(기준)	2개월	3개월	3~6개월	1년

○ 지원시기

- 주민공모는 분기별로 시행, 이웃만들기 지원은 연 1~2회 권장
- 유형별 사업기간은 지역별,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 가능

□ 주민공모사업 목적

도시재생사업과 실질적 연계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

- 도시재생 홍보, 다양한 주민(조직) 발굴
-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도시재생 추진 기반 마련
-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및 욕구 충족
- 마중물 사업에서 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 진행 지원 등

□ 지원 절차 흐름도

지원절차	내 용	비 고
사업계획 수립 공고	1) 현장센터, 자치구 협의 수립(실행계획안 참조) 2) 공고(소식지, 센터 홈페이지, 포스터, SNS 등)	* 희망지사업, 이웃만들기 지원은 운영주체 계획수립
↓		
사전상담	1) 신청자 및 발굴을 통해 공모사업 상담 2) 준비정도를 보가며 사업제안 시기 안내	* 개략적인 사업계획 확정 시 공고이전 사전상담 가능
↓		
제안서 접수	1) 현장센터 접수(직접, 우편, 이메일 등) 2) 센터에서 서류확인 및 보완 조치	* 희망지사업, 이웃만들기 지원도 현장센터 접수 원칙
↓		
심사/선정	1)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) 선정심사 3)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	
↓		
협약 보조금 교부	1) 선정자 워크숍 2) 제안서 수정 및 검토 3) 협약 4) 보조금 교부	
↓		
사업실행	1) 지원사업 추진 2) 컨설팅 및 모니터링	
↓		
결과보고 평가	1) 정산 및 결과보고 2) 개별 평가, 전문가 평가	

□ 서울특별시의 검토 의견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,
 -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,
 -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'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'(16.3.7.개정)을 마련하였고,
 -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을 목적으로 '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'을 마련하였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'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' 제4장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 중점 고려 사항 중 '4-4-2.(주민 등 의견 수렴)에서는
 -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콘텐츠에 대한 주민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렴'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'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' 중 3-3-4.(주민공모사업의 시행)에서는
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공모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주민·상인 등이 제안하여 마을조사 및 계획, 마을신문, 체험 및 행사, 주민·상인 공동체 활동 등 소규모 사업을 발굴·기획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,
 - 현장지원센터는 현장 활동가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주민·상인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 기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동시행령,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규정에 의하면, '활성화계획 수립권자' 및 '도시재생지원센터'가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는 「공직선거법」 제86조제2항 개최·후원 금지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하며, 시기, 절차, 방법에서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.

(2018. 1. 11. 서울특별시장 질의)

【 답 】 귀문의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「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과 동시행령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로 상시 가능하며,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.

(2018. 1. 16.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)